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비교 연구

- 외국의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 Focus on the Foreign Arbitration Rules -

최혁준* Hyuk-Jun Choi

〈 목 차 〉

- I. 서론
- II. 중재인의 의의
- III.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비교
- IV. KCAB와의 비교
- V. 결론

주제어 : 중재인, 중재판정부, 중재규칙, 중재인의 기피, 중재인의 보궐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강사

I. 서 론

현대의 중재제도는 기관중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은 중재원의 발전과 같이 해왔다. 우리나라의 중재법 자체는 임의중재를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성행하고 있는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심으로 한 기관중재이다. 중재원은 1966년에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발족한 이래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여 우리보다 반세기 이상이나 앞서 있던 일본의 중재제도를 추월할 정도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향후 동북아 경제권에서 중추적인 중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제도정비를 하여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중재인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재는 중재인이다”라는 말은 중재인의 중요성을 논할 때 흔히 인용되는 말로서, 중재에서 차지하는 중재인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중재인 제도를 조사하여 이를 현행 대한상사중재원의 제도와 비교하고, 그 장·단점을 찾아내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나가고자 하는 데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국의 중재인제도, 특히 국제중재에 있어 각국의 상사분쟁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소 중재규칙, 그리고 현대중재제도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London Court of International Arbitration)의 중재규칙, 그리고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중재가 행해지고 있으며, 관리중재의 대표적인 기관인 미국중재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국제중재규칙 및 지적재산권, 국제투자 등

특정분야의 중재를 위한 국제적인 기관들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그리고 임의중재규칙으로서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에서 국제사법의 통일화작업의 일환으로 제정한 UNCITRAL 중재규칙과 CPR의 분쟁예방 및 해결에 대한 국제기관(CPR; Center for Public Resources)의 중재규칙 등 6개 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중에서 중재인과 관련된 조항들을 발췌하여 수평적으로 비교하여 그 장단점을 추출하고, 외국중재제도의 장점을 한국중재제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II. 중재인의 의의

1. 중재인의 의의와 자격

(1) 중재인의 의의

중재인(arbitrator)이란 중재에 부탁된 분쟁을 자기의 책임 하에 최종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며, 중재판정부(arbitral tribunal)는 특정분쟁을 증거와 변론에 의거 최종적으로 판정하는 1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구성된 중재인단을 말한다. 중재에 있어 “좋은 중재는 좋은 중재인이다(Good arbitration is good arbitrator)”이라고 할 만큼 중재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재판정부는 1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와 2인 이상의 다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가 있다.

(2) 중재인의 자격

대부분 국내법은 중재인이 될 수 있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격요건

을 포함하고 있다. 즉, 중재인은 당사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들의 자격은 법률에 의한 극히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 의하여 제한되거나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중재인은 실정법의 원칙에 구속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불문하고 직업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선정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인은 행위능력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어떠한 제3자도 중재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재인은 당사자로부터 독립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과 공정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중재인은 법원의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직하고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사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야 하며 분쟁에 이해관계를 가져서도 안 된다.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후에 중재인의 불공정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중재기관의 규칙 또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재인은 무역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중재인단의 회원임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중재기관은 중재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중재인을 지원하는 교육시설을 제공하기도 하며¹⁾, 중재인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중재법에서는 중재인의 선정을 요청 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은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²⁾. 한편, 중재규칙에서는 중재인의 자격은 중재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중재인이 될 수 없다. 그러나

1) Training of Arbitrators,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 4, 5 and 10(1979, 1980 and 1985).

2) 중재법 제13조.

당사자가 중재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도 서면으로 그 중재인을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

2. 중재인의 권한과 의무

(1) 중재인의 권한⁴⁾

1) 중재판정권

중재인의 권한에는 중재인은 당해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권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할 권리를 갖는다. 즉, 당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의 존부 및 그 내용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문제는 절차법상의 일반원칙으로써 해당 중재판정부가 직접 본안 사건의 심리전에 판단해야 한다.

중재합의 자체에 대한 분쟁, 즉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와 무효·취소의 여부 및 존속과 소멸에 관한 분쟁이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소송으로 제기되었을지라도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중재를 수행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중재합의는 소송법상의 제소 여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법상의 계약이기 때문이다.

2) 중재인의 심리권

중재인은 중재절차 진행에 대한 권한이 있다. 중재절차는 중재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고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중재인이 정한다. 중재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는 중재합의로 정할 수도 있고 중재합의 후 별도로 합의하여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

3) KCAB 중재규칙 제19조.

4)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2005, pp.257-260.

다. 필요에 따라 중재절차의 전 과정에 관한 세부적 사항까지 합의할 수도 있고, 그 중 일부 필요사항에 관하여 합의하거나 특정 상설중재기관의 중재절차에 따르기로 합의할 수도 있다.

중재절차의 이행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와 같은 것으로서 중재인은 반드시 당사자를 심리하여야 한다. 당사자에게 각자 자기이익과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변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당사자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중재판정을 하였을 시는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된다. 그러나 당사자 심리주의에 예외규정이 있다. 즉, 중재규칙 제45조의 서면심리제도이다. 당사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서 분쟁을 심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중재인의 자유재량권

중재인은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과 유용성을 자유심증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자유심증주의와 동일한 원칙을 정하고 있다. 자유심증주의는 법정증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중재인의 양심과 이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그 자유로운 심리에 의하여 증거의 취사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은 윤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따라 형평의 이념을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심리종결과 심리재개권

중재인은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리종결 이후에도 판정부에서 심리미진이 발견되거나 당사자로부터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리재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리를 재개한 후 다시 판단을 내리게 된다.

5) 법원의 협조요청권

중재인이 중재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중재인의 직권

으로서 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중재인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이에 관한 직무이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그 신청의 적부, 이유의 유무 등을 심리하여 결정한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증인이나 감정인의 출석을 명하고 증언이나 감정의견의 진술 및 문서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官)에 조사를 촉탁하거나 외국에서의 증거조사를 촉탁하고 송달하는 절차를 행할 수 있다.

6) 중재판정문 작성

중재판정은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중재사건의 심리가 종결되면 분쟁사건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중재인이 수인(數人)인 경우에는 과반수찬성으로 판정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중재판정의 불성립으로 중재합의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중재판정이 성립되면 판정서를 작성하고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 중재판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나 불성립일 경우에는 판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사건은 종결된다. 또한 중재판정문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도로 통지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중재판정문은 당사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중재인의 의무⁵⁾

중재인이 중재인의 직무를 집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재인의 직무를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중재인의 중재인 수임승낙은 당사자 쌍방과 중재인 간의 계약이고 이 계약은 채권관계의 위임에 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인이 중재인

5) 김경배, 전제서, 2005, pp.260-261.

선임에 동의하고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중재절차를 실시하고 중재판정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중재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중재인 자신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중재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이 독자성, 중립성,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원과 동일한 지위에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 따라서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중재인이 중립적 지위에서 중재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위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재인의 직무는 불대행적 작위의무로서 그 이행이 본인의 양심과 경험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또한 중재인의 의무로서 중재법이나 중재규칙에서 정하는 실정법상 의무와 더불어 중재판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사법상 요구되는 의무로서 신의원칙과 법정주의에 입각한 정당성, 타당성을 구현하여야 함은 물론 판정에 있어 중립성, 합리성 및 법적용의 적정성, 견해의 일반성까지도 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중재인이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위탁사무는 중재절차면에서나 실제면에서 정의로운 판정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재인의 법적 위무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윤리적 의무까지 내포되는 것이라 하겠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이 당사자와의 계약의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원의 재판사무처럼 그 판정에 있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무 불이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 하겠다.

6) 한국헌법 제103조.

Ⅲ.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비교

1. 중재인 지명절차

(1) ICC

중재인 선정, 승인, 기피 또는 보궐에 대한 중재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결정이유는 알리지 않는다⁷⁾. 단독중재인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지명한다.

3인 중재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답변서에 각각 1명씩의 중재인을 지명하여 중재법원의 확인을 받으며, 나머지 한 명의 중재인은 사무국이 지명하고,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재법원이 그 중재인을 지명한다⁸⁾. 당사자를 위해 사무국이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법원은 그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국내위원회의 추천에 기초하여 선정하나 역시 예외는 인정하고 있다⁹⁾. 다수당사자인 경우, 그 다수인 당사자들은 공동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공동선정을 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사무국이 의장중재인을 포함한 모든 중재인을 자유재량으로 지명한다¹⁰⁾.

(2) AAA

중재개시 후 45일 이내에 중재인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사무국이 지명한다. 일방 당사자의 요청 또는 사무국의 판단으로 당사자들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중재인을 지명할 수 있다. 다수당사자인 경우 중재개시 후 45일 이내에 달리 합의

7) ICC 중재규칙 제7조(총칙)4, 5, 6.

8) ICC 중재규칙 제8조(중재인의 수)3, 4.

9) ICC 중재규칙 제9조(중재인의 지명과 확인)1,2,3,4,5,6.

10) ICC 중재규칙 제10조(다수당사자)1,2.

하지 않는 한, 사무국이 모든 중재인들을 지명한다¹¹⁾.

(3) LCIA

당사자들의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사무국이 중재인을 지명한다. 당사자들 간 다른 합의가 없고, 사무국이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사무국만이 중재인 지명권한을 가지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라 중재인을 지명한다. 다수당사자인 경우에는 중재법원이 모든 중재인을 지명한다¹²⁾. 당사자들이 중재인의 수나 선정 방법에 합의한 경우에도, 최종적으로는 사무국에 의해 중재인으로 지명되며, 사무국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법으로 선정된 중재인이라고 지명을 거부할 수 있다.

중재신청서에 중재인의 지명이 없거나 피신청인 또는 다른 지명권자가 기한 내에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법원이 중재인을 지명한다¹³⁾. 다수당사자인 경우에는, 각 당사자들의 중재인을 지명할 대표가 서면으로 선임되지 않으면, 사무국이 중재인을 지명하며, 이 경우 사무국이 중재판정부를 지명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서면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¹⁴⁾. 중재법원은 자유재량으로 중재판정부 구성을 위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¹⁵⁾¹⁶⁾.

11) AAA 중재규칙 제6조(중재인 지명)1,2,3,4,5.

12) LCIA 중재규칙 제5조(중재판정부의 구성)5.4, 5.5, 5.6.

13) LCIA 중재규칙 제7조(당사자 및 다른 지명)7.1, 7.2.

14) LCIA 중재규칙 제8조(3인 이상의 당사자)8.1, 8.2.

15) LCIA 중재규칙 제9조(신속한 구성)9.1, 9.2, 9.3.

16) LCIA 중재규칙 2.3 Failure to send a Response shall not preclude the Respondent from denying any claim or from advancing a counterclaim in the arbitration. However, if the Arbitration agreement calls for party nomination of arbitrators, failure to send a Response or to nominate an arbitrator within time or at all shall constitute an irrevocable waiver of that part's opportunity to nominate an arbitrator.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이 피신청인이 어떤 클레임이나 중재에서의 반대신청을 실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4) WIPO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규칙 제19조¹⁷⁾에 의해 중재개시 후 45일 내에 판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¹⁸⁾. 단독중재인의 선정은, 합의가 없는 경우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지명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한 기간 내에 지명하지 못하거나 기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19조에 따라 중재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명되어야 한다¹⁹⁾. 3인 중재인의 선정은 신청인이 중재신청서(Request for Arbitration)에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고, 피신청인은 중재신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이렇게 지명된 두 중재인은 두 번째 중재인이 지명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하고 그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이 된다.

제14조 b항²⁰⁾에 의거 본부가 중재인의 수를 결정한 경우, 판정부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본부로부터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은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여 본부와 피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어느 중재인이건 정해진 기간 내에 지명되지 않으면 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지명된다²¹⁾.

다수당사자인 경우에는, 3인판정부가 되어야 하고, 별도 합의가 없으면, 신청인들은 중재요청서에, 피신청인들은 그 요청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해당 당사자들 공동으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한다. 의장중재인의 지명은 본조의 b)항 혹은 제17조 b), c), d)항에 따라 지명되어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기간 내에 중재인을 공동으로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들)에 의하여 먼저 지명된 중재인은 무효가 되며, 본부가 2인을 지명한다. 이렇게 지명된 두 중재인들은 두 번째 중재인의 지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지명하며,

17) WIPO 중재규칙 제19조(선정의 해태) (a), (b-i, ii, iii, iv, v), (c).

18) WIOP 중재규칙 제15조(당사자합의에 의한 지명절차)(a), (b).

19) WIOP 중재규칙 제16조(단독중재인의 선정)(a), (b).

20) WIOP 중재규칙 제14조(중재인의 수)(b).

21) WIOP 중재규칙 제17조(3인중재인의 지명)(a), (b), (c),(d).

그 중재인이 의장중재인이 된다. 당사자들이 선정절차에 합의한 경우에는, 당사자합의와 상관없이 본조의 a)항과 b)항이 적용된다. 다만 그러한 조항들이 명시적으로 본 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²²⁾.

어느 일방당사자가 제15조²³⁾, 제17조²⁴⁾, 제18조²⁵⁾에서 요구하는 데로 1인의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본부가 지명한다. 만일 단독 혹은 의장중재인이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 요구하는 데로 지명되지 않은 경우 그 지명은 다음의 절차를 적용한다.

(i) 본부는 각 당사자에게 후보자 명부를 송부한다. 그 명부는 적어도 알파벳순서로 3인의 후보자 이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 명부는 각 후보자의 자격을 간략하게 기술한 기술서가 포함 혹은 첨부되어야 한다. 만일 당사자들이 어떤 특정한 자격에 합의하였다면 명부는 단지 그러한 자격을 충족하는 후보들의 이름만 포함하면 된다.

(ii) 각 당사자는 지명에 반대하는 어떤 후보의 이름을 삭제할 권한을 가져야 하며, 나머지 후보들에 대하여는 선호순서에 따라 번호를 붙여야 한다.

(iii) 각 당사자는 표시된 명단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부로 반송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표시된 명단을 반송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명단에 있는 모든 후보자들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iv) 당사자들로부터 그 명단을 받은 후 혹은 앞의 부가조항에 명시된 기간의 유효기일 내에 명단을 받지 못한 경우, 본부는 당사자들이 표시한 선호도와 반대를 참작하여, 명단에서 1인을 단독 혹은 의장중재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v) 반송된 명단들이 양당사자 모두가 선호하는 중재인이 없는 경우

22) WIOP 중재규칙 제18조(다수당사자인 경우의 3인 중재인의 선정)(a), (b), (c).

23) Article 15 - Appointment Pursuant Procedure Agreed Upon by the Parties.

24) Article 17 - Appointment of Three Arbitrators.

25) Article 18 - Appointment of Three Arbitration in Case of Multiple Claimants or Respondents.

에는, 본부가 단독 혹은 의장중재인을 지명한다. 양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지명된 중재인이 취임수락을 할 수 없고, 명단의 남은 자 중에서 양당사자들이 선호하는 중재인이 없는 경우에도 본부가 지명한다. 그러나 본부가 이러한 절차가 해당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부가 단독 혹은 의장중재인을 지명한다²⁶⁾.

(5) UNCITRAL

단독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하는 경우, 어느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1인 이상의 중재인 후보자나 중재인지명권자를 제안하며, 위 제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선정이나 지명권자의 선정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지명권자가 취임을 거부 혹은 중재인 선정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국장(the Secretary- Gener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게 중재인지명권자의 지정을 요청한다.

중재인지명권자가 중재인을 지명할 때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지명권자가 달리 판단하지 않는 한 다음의 명부와 절차를 이용한다.

(a) 3명 이상의 동일한 명단을 양당사자들에게 송부한다.

(b) 각 당사자들은 명단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을 반대하는 1인 이상의 후보자의 명단들을 삭제한 후 나머지 명단을 자신이 선호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반송한다.

(c) 반송된 명단에서 당사자들의 선호도에 따라 단독중재인을 지명한다.

(d) 중재인의 선정이 이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명권자가 재량으로 단독중재인을 지명한다²⁷⁾.

3인중재인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두 번째 중재인의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두 중재인들이 의장중재인의

26) WIOP 중재규칙 제19조(선정의 해태)(a), (b), (c).

27) UNCITRAL 중재규칙 제6조(중재인의 선정) 1, 2, 3.

선정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은 제6조 하에서 단독중재인이 선정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명권자가 지명한다²⁸⁾. 어느 당사자가 중재인 지명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내에 그가 선정한 중재인을 타방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a) 타방당사자는 지명권자에게 두 번째 중재인을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b) 지명권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선정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선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음 중재인을 선정한 당사자는 헤이그에 있는 상설중재법원(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의 사무총장(the Secretary General)에게 지명권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지명권자에게 중재인 지명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통지서 사본 1부, 분쟁이 발생된 혹은 분쟁발생과 관련된 계약서사본 그리고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계약서 사본 1부를 지명권자에게 보내야 한다. 지명권자는 어느 일방당사자로부터 그 기능을 충족하는데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1인 혹은 그 이상의 명단이 중재인 선정을 위하여 제안된 경우에는, 그들의 자격내용과 함께, 성명, 주소 그리고 국적이 표시되어야 한다²⁹⁾.

(6) CPR

당사자들이 선정하는 중재인의 선정 및 답변서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은 제3중재인의 선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협의의 시작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정을 시도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3인중재판정부에 합의한 경우, 답변서의 통지 후 20일 이내에 중재인 선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중재인선정절차를 진행하

28) UNCITRAL 중재규칙 제7조(중재인들의 선정) 1, 2, 3.

29) UNCITRAL 중재규칙 제8조(중재인들의 선정) 1, 2.

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최초의 협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정을 시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재인들은 규칙 제6조에 규정된 대로 선정되어 져야 한다³⁰⁾.

일방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거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선정해야 하는 중재인(들)을 선정하지 못하였거나, 당사자선정 중재인들이 제3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거나, 합의된 중립적인 기구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하는 경우,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중립적인 기구에 서면으로(타방당사자에게 사본을 송부하고) 요청한다.

중립적 기구는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후보자명단을, 2인 혹은 3인의 경우에는 7인 이상의 후보자 명단을 당사자들에게 제공한다.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후보자들의 과반수는 제3국적이어야 한다. 명단은 각 후보자들의 자격에 대한 간략한 기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번호를 붙이고, 어느 후보에게 있을 지도 모르는 반대의견을 기술하고, 그렇게 표시된 명단을 중립기구와 타방당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보자명단 수령 후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명단을 반송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명단에 있는 모든 후보에게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중립기구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로 지명하고, 규칙 제7조에 언급된 표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지명자를 중재인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만일 두 후보자가 동일 순위가 된 경우에는 중립기구가 어느 한 후보자를 지명한다. 어떤 이유로든 이절차가 요구되는 숫자만큼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립기구가 지명한다. 이 경우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³¹⁾.

30) CPR 중재규칙 제5조(당사자들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5.2, 5.3.

31) CPR 중재규칙 제6조(중립적 기구에 의한 중재인의 선정)1, 2, 3, 4.

2. 중재인의 기피

(1) ICC

중재인 선정, 승인, 기피 또는 보궐에 대한 중재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러한 결정의 이유는 알리지 않는다³²⁾.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지명 또는 확인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또는 기피신청인이 기피의 근거가 되는 사실, 상황을 알게 된 날이 앞의 통지일 이후인 때에는 그 사실 상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은 관련 중재인, 타방 당사자 또는 관련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의 모든 구성원으로 하여금 적절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소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한 후에 기피의 허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출된 소견서들은 관련 당사자와 중재인에게 송부 한다³³⁾.

(2) AAA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인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기피 신청을 야기할 상황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사무국에게 신청한다.

사무국은 기피신청의 접수 즉시 타방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을 통지한다. 한 명의 중재인이 일방 당사자에게 기피 신청을 받은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 기피 신청에 대해 동의할 수 있고, 만약 합의가 있다면, 그 중재인은 사임하여야 한다. 기피 신청을 받은 중재인은 그러한 동의가 부재하는 경우에도 사임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사임이 기피 이유의 정당성을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³⁴⁾. 만약 타방 당사자가 그 기피 신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또는 기피를 받

32) ICC 중재규칙 제7조(총칙) 4항.

33) ICC 중재규칙 제11조(중재인의 기피) 1, 2, 3.

34) AAA 중재규칙 제8조(중재인의 기피)1, 2, 3.

은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사무국이 결정한다³⁵⁾.

(3) LCIA

어느 중재인이 중재법원과 당사자들 그리고 다른 중재인들에게 사임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취임수락을 거부하거나,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행이 부적절할 경우, 또는 일방 당사자에 기피신청을 받거나 나머지 중재인들로부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법원은 중재인 선정을 철회하고 다른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중재법원은 사임하는 중재인의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느 중재인이 중재합의(중재규칙을 포함하여)를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행동한 경우 또는 양당사자들 사이에서 정당하거나 공정하게 행동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합리적인 근면성을 가지고 중재절차를 수행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지연 또는 비용을 피하지 않은 경우, 그 중재인은 중재법원의 의견으로 부적절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또는 기피사유를 안 이후 15일 내에, 기피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는 중재법원, 중재판정부 그리고 모든 당사자들에게 기피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피 신청된 중재인이 사임을 하지 않거나 또는 모든 당사자들이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중재법원이 결정한다³⁶⁾.

(4) WIPO

중재인은 지명이 있는 후에 알게 된 사유로만 기피될 수 있다³⁷⁾.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지명을 통지받은 후 혹은 기피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부와 판정부 그리고 타

35) AAA 중재규칙 제9조(중재인의 기피).

36) LCIA 중재규칙 제10조(중재인선정의 취소)1, 2, 3, 4.

37) WIPO 중재규칙 제24조(중재인의 기피)(a), (b).

방당사자에게, 기피사유를 기재한 통지를 해야 한다³⁸⁾. 기피신청인 된 경우 타방당사자는 그 기피에 대해 답변할 권리를 가지며, 기피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부와 기피를 한 당사자 그리고 중재인들에게 답변서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³⁹⁾. 판정부는 기피가 제류 중인 때에도 재량으로 중재심리를 일시 정지하거나 속행할 수 있다⁴⁰⁾. 타방당사자가 기피에 동의하거나 중재인이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중재인은 기피사유가 유효한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⁴¹⁾. 만일 타방당사자가 기피에 동의하지 않고 기피된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는 경우, 최종 결정은 본부가 자유재량으로 한다⁴²⁾.

(5) UNCITRAL

중재인은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문제로만 기피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에 대하여는 그 중재인의 선정이 이루어진 후에 알게 된 이유에 의하여서만 기피할 수 있다⁴³⁾.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기피된 중재인의 선정이 타방당사자에게 통지된 후 혹은 제9조와 제10조에 언급된 상황들이 그 당사자에게 알려진 후 15일 이내에 기피통지를 보내야 한다.

기피는 타방당사자, 기피되는 중재인 그리고 중재판정부의 다른 구성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피사유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기피되었을 때, 타방당사자는 그 기피에 동의할 수 있다. 해당 중재인은 기피 후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피사유를 시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두 경우 모두에 있어 기피된 중재인을 선임한 절

38) WIPO 중재규칙 제25조(Challenge of Arbitrators)

39) WIPO 중재규칙 제26조(중재인의 기피)

40) WIPO 중재규칙 제27조(중재인의 기피)

41) WIPO 중재규칙 제28조(중재인의 기피)

42) WIPO 중재규칙 제29조(중재인의 기피)

43) UNCITRAL 중재규칙 제10조(중재인의 기피)1-2항.

차 중에 일방당사자가 자신의 선정이나 선정에 참여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6조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가 보궐중재인의 선임에 대하여 전적으로 적용된다⁴⁴⁾.

만일 타방당사자가 기피에 동의하지 않고 기피된 중재인이 자신의 업무를 철회하지 않는 경우에 기피에 대한 판단은 다음의 자가 한다.

- (a) 처음의 선정이 선정권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그 선정권자,
- (b) 처음의 선정이 선정권자에 의하여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 선정권자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정권자,
- (c) 다른 모든 경우에는,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선정권자를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된 선정권자.

선정권자가 기피를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내지 제9조에 규정된 대로 중재인의 지명이나 선정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보궐중재인이 지명되거나 선정되어야 한다. 단, 이 절차가 선정권자의 지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선정은 기피를 판단한 선정권자에 의하여 선정되어야 한다⁴⁵⁾.

(6) CPR

중재인은 독립성과 공정성의 이유로 기피될 수 있다. 지명된 중재인에 대하여는 그 지명이 이루어진 후에 알게 된 사유에 의하여서만 기피될 수 있다.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판정부 구성통지를 받은 날 혹은 규칙 7.4조에 명시된 기피사유가 최종적으로 발생되고 그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판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타방당사자에게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통지는 특정된 기피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중재인이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기피된 경우, 타방당사자는 그

44) UNCITRAL 중재규칙 제11조(중재인의 기피)1-3항.

45) UNCITRAL 중재규칙 제12조(중재인의 기피)1-2항.

기피에 동의할 수 있으며, 혹은 그 기피된 중재인이 임의로 사임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 중 어떠한 것도 기피의 유효성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격이 없음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중재인이 스스로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정부의 나머지 인원의 만장일치 투표로 결정하며, 판정부가 단독중재인이거나 혹은 기피를 결정하지 못하였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중립기구가 결정한다⁴⁶⁾.

3. 중재인의 보궐

(1) ICC

중재인 선정, 승인, 기피 또는 보궐에 대한 중재법원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그러한 결정의 이유는 알리지 않는다⁴⁷⁾. 중재인이 교체되어야 할 경우, 원래의 선정 절차를 따를지의 여부는 중재법원이 결정한다. 새롭게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미 진행하였던 절차들을 어느정도 반복해야 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절차의 종결 이후에, 사망하거나 중재규칙 제12조 1항 그리고 제12조 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해 중재인이 사임한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나머지 중재인들만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중재인들과 당사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⁴⁸⁾.

(2) AAA

보궐 중재인은 당사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는 경우 중재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⁴⁹⁾. 3인 중재판정부 중 1인의

46) CPR 중재규칙 제7조(중재인의 자격, 기피, 보궐)4-7항.

47) ICC 중재규칙 제7조(총칙)4항.

48) ICC 중재규칙 제12조(중재인의 보궐)1-5항.

49) AAA 중재규칙 제10조(중재인의 보궐)

중재인이 중재규칙 제10조에서 확인된 이유 외의 이유로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인의 다른 중재인들은 제3의 중재인이 참여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중재를 그들의 재량으로 계속 진행하거나,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나머지 두 명의 중재인들이 제3 중재인의 참여 없이 중재를 계속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고 사무국은 판정부의 공석을 선언하고 당사자들이 다른 방식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 만약 대체 중재인이 중재규칙 제10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선정되면, 중재판정부는 이전에 개최되었던 모든 또는 일부분의 심리가 반복되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자유재량으로 결정한다⁵⁰⁾.

(3) LCIA

중재인이 어떠한 사유로든지 중도에 중재인직을 그만 두는 경우 중재법원이 수당과 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⁵¹⁾. 중재법원은 기피된 중재인의 보궐에 있어 원래의 지명 절차를 따를 것인지의 여부를 중재법원이 자유재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중재법원이 원래의 지명절차를 따르기로 결정하였다면, 15일 이내에(또는 중재법원이 정한 그 이내의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일방 당사자에게 재추천할 수 있는 권리는 상실되며 중재법원이 보궐중재인을 지명한다⁵²⁾. 3인 중재판정부 중 어느 중재인이 계속해서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머지 중재인들은 중재법원, 당사자들 그리고 제3 중재인에게 서면 통지를 하고 중재절차(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판정 내리는 것을 포함하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러한 결정의 이유들을 판정문, 명령 또는 다른 결정들에 언급하여야 한다.

50) AAA 중재규칙 제11조(중재인의 보궐)1-2항.

51) LCIA 중재규칙 제10조(중재인지명의 철회)1항.

52) LCIA 중재규칙 제11조(중재인의 지명과 보궐)1-2항.

두 중재인들이 제3중재인의 참석 없이 중재절차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두 중재인들은 당사자들과 중재법원에 그러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두 중재인들과 어느 당사자는 그 제3중재인 선정의 취소와 중재규칙 제10조에 따른 대체를 위해 중재법원에 그 문제를 회부하여야 한다⁵³⁾.

(4) WIPO

보궐되는 중재인은 대체되는 중재인의 지명에 적용되었던 절차에 따라 지명된다.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기피되었거나 혹은 사임한 경우에, 본부는 그 당사자에게 새로운 지명권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본부가 추가지명을 하여야 한다. 대체가 지연되면,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한, 중재절차도 연기되어야 한다⁵⁴⁾.

중재인이 보궐될 때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정부가 앞서 개궐되었던 심리를 다시 반복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⁵⁵⁾.

3인판정부에서의 어느 한 중재인이 정당한 통지에도 불구하고 판정부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중재인들은 어느 일방당사자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절차를 계속하여 판정, 명령,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나머지 두 중재인들이 세 번째 중재인의 참여 없이는 중재를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본부는 그 중재인이 판정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입증을 받고 판정부의 업무의 정지를 선언하고,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그 중재인을 보궐하여야 한다⁵⁶⁾.

53) LCIA 중재규칙 제12조(절차계속진행에 대한 다수결권한)1-3항.

54) WIPO 중재규칙 제33조(중재인의 보궐)(a-c).

55) WIPO 중재규칙 제34조(중재인의 보궐)

56) WIPO 중재규칙 제35조(기피된 판정부)(a-b).

(5) UNCITRAL

중재절차도중에 중재인의 사망이나 사임의 경우 그 중재인의 지명이나 선정에 적용되었던 절차에 따라 보궐된다.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의 행위를 하지 못하거나, 혹은 법률상이나 사실상 그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만일 중재인의 지명권자가 기피를 인정하는 경우, 원래 중재인의 지명이나 선정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보궐중재인이 지명되거나 선정되어야 한다⁵⁷⁾.

제11조 내지 제13조의 단독 혹은 의장중재인이 대체되는 경우, 먼저 개최되었던 어떤 심리도 다시 반복되어야 한다. 어떤 다른 중재인이 대체되는 경우 그 전에 개최되었던 심리는 중재판정부의 재량으로 반복될 수 있다⁵⁸⁾⁵⁹⁾.

(6) CPR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되지 않은 중재인의 보궐은, 보궐되는 중재인이 선정되었던 절차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당사자에 의하여 지명된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혹은 기피가 성사된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지명하였던 그 당사자가 보궐되는 중재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해당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타방당사자에게 보궐중재인을 통지하지 못하면, 판정부는 중립기구에 보궐중재인을 지명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중재인이 역할이나 기능을 정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규칙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궐된다. 1인 판정부에 있어 중재인기피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중립기구가 결정한다. 3인 판정부의 경우에는 판정부의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된다. 단독 혹은 의장중재인이 보궐되는 경우, 보궐된 중재인이 먼저 개최되었던 심리의 반복여부를 결정한다. 의장이 아닌 중재인의 경우에는 판정부가 재량으로 결정 한다⁶⁰⁾.

57) UNCITRAL 중재규칙 제13조(중재인의 대체)1-2항.

58) UNCITRAL 중재규칙 제14조(중재인 대체의 경우 심리의 반복)

59) UNCITRAL 중재규칙 제12조(중재인의 기피)

IV. KCAB와의 비교

1. 중재인 지명 절차

KCAB에서는 중재신청시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무조건 중재인후보자명단을 발송하여 국내중재의 경우 15일, 국제중재의 경우 30일 내에 우선순위를 붙여오도록 하고 있다⁶¹⁾. 그러나 대부분의 중재기관들이 당사자들의 합의기간을 부여한다. ICC는 30일, AAA는 45일, WIPO는 45일, UNCITRAL에서는 일방의 선정방법에 대한 합의요청일로부터 30일 그리고 선정권자가 지명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의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선정방법의 합의기간을 준다. 사무국이 중재인을 지명하는 경우 ICC는 각 국내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명하며, AAA, LCIA 는 사무국이 임의로 지명한다. UNCITRAL에서는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국장(the Secretary-General of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게 중재인선정권자의 지정을 요청하여, 그 선정권자에 의해 선정된다.

WIPO, UNCITRAL, CPR에서는 사무국이나 중재인 선정권자에 의해 중재인이 선정될 때에는 KCAB와 마찬가지로 중재인후보자 명단을 제공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이때 후보자의 숫자는 WIPO와 UNCITRAL에서는 최소 3인 이상을, 그리고 CPR에서는 1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을, 2인 혹은 3인의 경우에는 7인 이상을 제시한다. 그리고 WIPO에서는 반대하는 후보자의 명단을 삭제할 권력이 부여되며, CPR에서는 반대하는 후보에 대하여 반대의견만을 제시할 수 있다. 특이할 사항은 LCIA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중재인선정권자를 지명한 경우에 그 지명권자에 의해 지명된 중재인이라도 사무

60) CPR 중재규칙 제7조(중재인의 자격, 기피, 대체)8-10항.

61) KCAB 중재규칙 제20조 제2항.

국이 지명을 거부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인 경우에는 주로 사무국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많이 규정되어 있으나 KCAB의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후보자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수당사자인 경우의 중재인 지명방법에 대하여서는 KCAB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ICC에서는 각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지명하고, 공동지명을 못하면 사무국이 재량으로 지명하고, LCIA에서도 사무국이 지명하며, WIPO에서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지명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지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들)에 의하여 먼저 지명된 중재인은 무효가 되며, 본부가 2인을 모두 지명한다.

2. 중재인의 기피

중재인의 기피절차에 대하여 KCAB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외국의 중재규칙들은 모두 중재인 기피절차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인의 지명 또는 확인통지를 받은 후 또는 기피신청인이 기피의 근거가 되는 사실, 상황을 알게 된 날이 앞의 통지일 이후인 때에는 그 사실 상황을 알게 된 날로부터 ICC는 30일, AAA, WIPO, LCIA, UNCITRAL, CPR에서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한다.

최종적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은 AAA, ICC, LCIA, WIPO는 사무국이, UNCITRAL에서는 중재인 선정권자가 CPR에서는 중립기구가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또 대부분의 중재규칙에서는 양당사자가 기피신청에 합의하면 그 중재인은 사임하여야 한다. LCIA에서는 기피사유에 중재인의 불성실도 포함하며, 사무국은 사임하는 중재인의 보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중재인의 보궐

KCAB에서는 중재를 보궐하는 경우에는 그 보궐되는 중재인이 선정되었던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⁶²⁾. ICC, LCIA에서는 보궐 절차를 사무국이 결정한다. LCIA에서는 원래의 절차를 따르기로 하였으나 그 지명당사자가 15일 내에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무국이 지명한다. UNCITRAL, WIPO, CPR에서는 보궐은 대체되는 중재인의 지명에 적용되었던 절차에 따르지만 WIPO에서는 사무국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경우에는 사무국이 지명한다. CPR에서는 해당 당사자가 20일 내에 보궐을 하지 못하면 중립기구가 보궐중재인을 지명한다.

KCAB에서는 절차의 반복여부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신 중재인 앞에서 그동안의 심리결과를 진술하여 신중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절차를 속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⁶³⁾. 외국의 경우에는 ICC, AAA, WIPO는 절차의 반복여부를 새로운 판정부가 결정한다. UNCITRAL에서는 중재인이 보궐되면 절차를 다시 개최한다. WIPO에서는 보궐될 때까지 절차가 중지된다. CPR에서는 단독 혹은 의장중재인이 보궐되는 경우, 그 중재인이 심리의 반복여부를 결정한다. 의장이 아닌 중재인의 경우에는 판정부가 결정한다. ICC에서는 중재절차의 종결 이후에, 중재인이 결원이 된 경우, 나머지 중재인들만으로 판정을 내릴 것인지의 여부를 사무국이 결정한다. AAA, WIPO에서는 나머지 중재인들이 절차의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LCIA에서는 일부중재인이 사임한 경우에도 나머지 중재인이 절차를 계속하여 판정을 내릴지 여부를 판정부의 나머지 중재인들이 결정한다. LCIA에서는 사임한 중재인의 보수를 중재법원이 결정한다.

62) KCAB 중재규칙 제26조 제1항.

63) KCAB 중재규칙 제26조 제2항.

V. 결 론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31일 한국의 중재제도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중재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2000년 5월에 중재규칙을 개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국제중재기관 예를 들어 ICC의 중재규칙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중재법에 의거하여 중재를 하였다면 그 중재는 한국중재법에 따른 것이므로 국제성이 없다고 할 것인가? 다시 말하여 중재제도의 국제화는 중재법의 국제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재규칙의 국제화에 있다.

중재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중재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재인과 관련된 항목들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비교하여, KCAB의 장점을 살리고 타중재기관들의 장점을 도입한다면 KCAB의 중재도 국제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지금까지 받아왔던 비판들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재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서는 당사자자치를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국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외국의 국제중재규칙들은 특히 중재인 선정이나 보궐 등 중재절차와 관련되어서는 일단 당사자들의 합의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는 중재기관이나 임의중재규칙인 경우에는 해당중재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대신 이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외국중재기관들에서의 중재인과 관련된 사항들과 KCAB를 비교하여, KCAB의 중재규칙에서 보완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현재 KCAB에서는 중재인의 “지명(appointment, nomination)”과 “선정(select, choose)”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각국의 중재규칙을 보면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즉, 중재인을 후보자의 제시없이 당사자나 사무국 혹은 기타 선정권자가 직접 지명하는 경우에는 “지명

(appointment, nomination)”을 사용하나, 사무국에서 중재인 후보자 명단을 제시하여 그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선정(select, choo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또한 대부분 중재인을 지명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분쟁들을 유형화하여 중재인 선정방식도 우리나라처럼 후보자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었지만 이번에 살펴본 국제중재규칙을 지명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재기관들이 지명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② 중재인 선정방식에 있어서 UNCITRAL과 CPR 등과 같이 중재신청 시에 당사자들이 중재인수와 선정방법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당사자자치를 존중하는 중재의 취지에 부합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중재기관들이 당사자간에 중재인선정방법에 대하여 합의가 없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물론 UNCITRAL과 CPR은 임의중재규칙이므로 당연히 그런 절차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지만 금액이 크고 중대한 사건에서는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중재인의 수와 선정방법의 예를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하는 방법도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재인이나 중재인후보자들을 당사자들이 직접 지명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자치를 보장한다는 강점은 가지고 있으나, 당사자들의 중재인선정능력에 따라 당사자들간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불공정, 혹은 비독립적인 관계를 규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③ 중재인의 수나 선정방법에 대하여 타 중재기관에서는 대체적으로 사무국의 역할이 매우 강하다. 따라서 KCAB에서는 일단 당사자간의 합의의 기회를 주고 그 기간 내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보자명단의 제시없이 사무국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국제중재의 경우에는 국외거주 중재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에서는 단독중재인이나 의장중재인의 경우에는 주로 당사자가

지명한 중재인들, 혹은 당사자들이 지명한 선정권자, 혹은 사무국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지명되는데 반해 중재원에서는 거의 무조건 후보자들을 제시하여 선정한다.

④ 중재인기피절차에 대하여 다른 중재기관에서는 절차를 중재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결정은 사무국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중재규칙에는 기피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중재인에 대한 기피사유가 발생하면 만일 중재인이 사임하지 않으면 시간을 많이 요하게 되며, 또한 이에 대하여는 사무국의 역할이 전혀 없다.

또한 법원의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피신청중이라고 하더라도 중재인은 절차를 속행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만일 판정을 내린 후에 법원에서 중재인의 기피결정이 받아들인다면 매우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병근, 국제중재의 기본문제, 도서출판 소화, 2000.
 김경배, 국제무역분쟁과 ADR, 200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제11권, 2001.
 _____, 외국중재법규집 제1집, 2005.
 목영준, 상사중재법론, 박영사, 2000.
 이주원·김경배·신군재, 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무역경영사, 2003.
 최장호, 상사분쟁관리론, 도서출판 두남, 2003.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Dispute Resolution Journal, 2003.
 Holtzmann. Howard M., United States-National Report,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2, 1977.

International Council for Commercial Arbitration,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XI, 1996.

Nolan-Haley, Jacqueline M.,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cond Edition, West Group, 2001.

Shilton. Alan W., The Evolution of Modern Commercial Arbit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4 No.2, 1987.

Training of Arbitrators,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 4, 5 and 10(1979, 1980 and 1985).

Wetter. J., Pleas of Sovereign Immunity and Act of Sovereignty before International Arbitral Tribunals, Journal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Vol.2. 198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posi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 Focus on the Foreign Arbitration Rules -

Hyuk-Jun Choi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investigate other countries' arbitrator systems to compare with the current KCAB's system and to find their merits and demerits so that we can make up for the demerits of KCAB's arbitrator system and to make the most use of its merit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arbitral procedure is the arbitrator. If we compare clauses related with the arbitrator to KCAB's arbitration rules, expand the merits of it and apply the merits of other arbitrating organs, KCAB's arbitration can avoid criticism which it has got so far while it was handling the international cases. Also, we may need to grow up the role of the executive office in the range of respe+

cting the self-government of the concerned party for the rapid proceeding of arbitral procedure. According to the foreign countrie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they go with the process that they firstly give the concurrence period to the concerned parties, especially related with the arbitral procedure such as selection of arbitrator or filling the vacancy of the arbitrator, and as for the concerned party who doesn't fulfill within that period, the arbitrating organ or the other one corresponding to the pertinent arbitrating organ in case of the ad-hoc arbitration rules fulfill instead.

Key Words : Arbitrator, Arbitral Tribunal, Arbitration Rules, Challenge an Arbitrator, Filling the Vacancy of the Arbitrator